

## WTO 시대의 산업·무역정책 방향

宋基在\*

작년 12월 15일 UR이 47 년만에 극적으로 타결된 데 이어 금년 4월 15일 마라케시에서 111 개 국의 대표들이 최종 서명함으로써 WTO 시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세계경제는 상호연계성이 더욱 강해지게 되었고 국가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데, 바야흐로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투입하는 한편,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라운드가 가속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이같은 새로운 국제 규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정책·제도에 대한 일

대 수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런데 WTO체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시적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선진국의 문턱에 선 우리 경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형성의 축이 될 WTO를 개관해 보고 WTO 규범이 미치는 영향과 주요국의 대응 전략 등을 살펴 보고 우리의 산업·무역정책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WTO의 개관

#### WTO의 성격

WTO는 원래 UR 협정문 종결시까지의 다자간 무역기구(MTO)를 개칭한 것인데, 이는 미국의 입장이 크게 반영된 결과로 알려지고 있다.

WTO의 탄생은 세계 무역 질서가 기존의 GATT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국제무역체제의 출범을 의미하게 된다. GATT는 협

\* 필자는 프랑스 파리 10大學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산업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일반기계공업 실태와 수입대체 촉진방안 연구」, 「제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관리 혁신 방안」, 「21세기를 향한 한국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공동), *The Heavy Machinery Industries of Korea : Problems and Policies* (IBRD project)(공동), *La Maitrise de la technologie dans l'industrialisation des NPI* (신흥공업국의 산업화과정에서의 기술 극복) 등의 연구보고서, 논문을 발표하였다.

정으로서 국가간 무역분쟁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속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갖고 있었다. 즉 만장일치라는 의사결정 방식으로는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상충되는 통상 문제를 중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이해 당사자 국가 간의 쌍무협정과 무역마찰의 빈발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WTO는 협정이 아닌 국제기구로 발족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GATT와는 성격이 다르다. 의사결정도 1국 1표를 행사하는 다수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WTO는 운영 방침을 자유무역 질서 유지에 두고 분쟁 조정이나 교역품에 대한 관세인하, 개방 등 모든 업무 처리를 이 정신에 준해 처리한다. 이는 2차대전 후 GATT를 발족시킨 취지는 개별국가의 보호무역주의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반성에서였다. 즉 WTO는 이 정신을 이어 받아 자유무역체제를 확고히 하자는 취지에서 발족하게 된 것이다. 원래 GATT 발족 당시에도 ITO(국제무역기구)의 구성 논의가 있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과거를 갖고 있다.

따라서 WTO가 GATT와 다른 점은, 첫째 분쟁해결기구를 통하는 준사법적 기능을 갖는 점, 둘째 단순협정이 아닌 국제기구로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국제무역 규범을 관장하는 점, 셋째 의사결정 방식이 다수결(2/3, 3/4 다수결 등) 도입으로 신속한

합의 도출이 가능한 점 등이다.

또한 GATT 회원국들 중 UR 협정을 비준한 나라는 자연스럽게 WTO 회원국이 되지만 비준을 못한 나라는 여전히 GATT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모든 GATT 회원국들이 UR 협정을 비준할 때까지는 WTO와 GATT가 공존하게 된다. 따라서 WTO의 앞날이 반드시 밝은 것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특히 미국이 UR 타결과는 무관하게 '통상 301조' 존속을 주장하고 있는 점도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다. WTO 16조 4항은 '가입국들은 통상과 관련된 국내법이 WTO 규정과 일치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만 규정하여 강제성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 WTO의 역할

WTO의 출범은 쌍무협상을 최대한 줄이고 다자간 협상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크다.

GATT가 전후 48년간 자유무역 확대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최혜국대우(MFN)라는 원칙 때문이었다. 선진국간에 맺어진 개방 약속은 이같은 원칙에 따라 개도국에 유익하게 작용하였다. 하지만 이같은 GATT의 아량은 함께 선진국의 경기 침체로 퇴색하게 됨에 따라 '받은 만큼 준다'는 상호주의가 급속하게 확산되었고 개도국들은 동등한 경쟁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

같은 배경으로 1980년대 들어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의 무역적자 확대는 다자주의로부터 통상압력을 보다 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쌍무협상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하였다.

이들은 GATT 체제를 일탈할 수 있는 수출자유규제(VER), 시장질서협정 등 이른바 灰色조치(Grey Area Measures) 및 반덤핑제도를 남용, 결국 신보호주의를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GATT 체제는 이같은 反 GATT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WTO의 출범은 집행력 있는 '경제현장'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데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 더구나 다수결 의사결정방식으로 개도국들에게는 WTO가 선진국의 무차별 통상압력을 방어할 수 있는 '방과제'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WTO는 무역분쟁 해결력과 무역정책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기능도 갖는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과 함께 국제경제 질서의 강력한 축이 될 것이다.

WTO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각국 대표들로 구성되는 각료회의를 두고 2년에 1번씩 총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2년 1회로 통상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각료회의 밑에 쏠 가맹국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어 WTO 기능을 대행

시킨다. 총회에는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심의기구를 두고 총회의 밑에는 상품무역(GATT), 서비스무역(GAT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의 세 이사회를 두고 있다(<그림 1> 참조).

## WTO 협정문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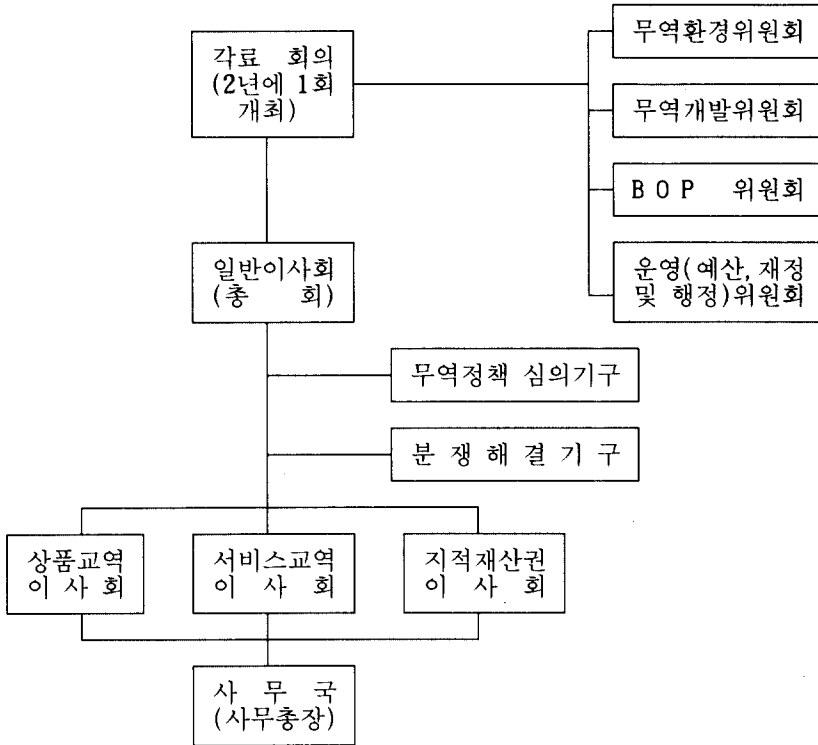
WTO 설립 협정은 UR 협상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크게 4개의 보조 협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일반협정으로 이는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먼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부속서 1A)은 상품무역에 관한 합의로서 이론적으로는 GATT 1947과 별개이지만 'GATT 1947의 규정', 지금까지의 양해·양허와 그에 대한 최종 UR 협상시 모든 개정을 통하여 흡수하였다. 이 일반협정에는 GATT 1994, GATT 1994 UR 의정서, 농산물협정, 위생면역장치(SPS) 등 14개 협정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부속서 1B)은 GATT 1947에서는 거의 취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각 가맹국이 어떠한 서비스 분야를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라는 별개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

끝으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TRIPS)협정(부속서 1C)도 역시 GATT 1947에서는

<그림 1> WTO(세계무역기구)의 구조



주: 무역환경위원회 설립 여부는 추후 결정.

전혀 취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가맹국의 지적재산권 제도에 있어서 각 지적재산권의 최저 보호기준과 국내 법령에 의한 권리행사 절차에 대한 최저 기준을 정한 합의서이다.

둘째, 분쟁해결 규칙과 수속에 관한 양해사항(DBS)(부속서 2), 셋째, 무역정책심의기구(TPRM)(부속서 3), 넷째, 복수국간 무역협정(부속서 4항공기, 정부조달, 낙농, 우유 관련) 등이다.

## WTO 규범의 영향

### 국제 경제

WTO체제의 출범은 향후 국제통상관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우선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가 어느 정도 약화되고 자유무역(free trade) 및 공정무역(fair trade)이 강화될 것이다. 관세의 수입 장벽으로서의 역할은 약해질 것이다.

UR이 타결됨으로써 향후 국제통상관계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WTO체제의 출범은 쌍무협상을 억제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 특히, 미국 이외의 주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들은 향후 통상문제 발생시 강력한 準사법적 기능을 가진 WTO의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를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WTO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통상문제에 대한 '결과 지향형' 접근방식(result oriented approach)을 취해 온 미국에 비하여 '국제규범 지향형' 접근방식(rule oriented approach)을 주장해 온 일본·EC·개발도상국 등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역블럭화는 향후에도 당분간 계속 추진되어 갈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유럽·미주·아시아의 3극체제로 통합되어 갈 것이다. 한편으로는 지역블럭 간의 자유화가 진전되는 중층적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지역블럭 간의 자유화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로 전환되어 장기적으로는 범세계적 무역 자유화와 세계경제 통합으로 진전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다. 첫째, 향후 선진국들이 경기침체나 실업문제 등 국내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각국이 UR 협정 및 양허계획을 철저히 지킬 것

인지는 다소 의문시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 선진국 간의 협력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어 다자간 자유무역화의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선진국의 특정 국가에 대한 쌍무협상 압력은 WTO체제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對日 통상압력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번 UR 협정 내용은 매우 포괄적이기는 하나 여전히 계속 논의할 분야가 남아 있다. 예컨대 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 보호, 공정 경쟁 정책, 노동 문제 등은 향후에도 국제규범의 강화나 새로운 제정을 위한 긴장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소위 '그린라운드' 또는 '클린턴라운드'라는 새로운 다자간 협상의 장이 태동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무역 규모 증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IBRD와 OECD는 WTO체제가 앞으로 관세율 인하 등으로 세계경제에 매년 2,130억 달러, 2,740억 달러 규모의 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다.

WTO체제하의 국제경제는 대체로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들보다 실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의존도가 큰 일부 선발개도국들에게는 다자간 협상으로 인해 후발개도국들에 비

해 상대적으로 실익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규범이 미치는 소극적인 영향도 적지 않다.

###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모호하게 방치된 반덤핑·보조금 등 각종 무역 규범이 보다 엄격하고 명료하게 규율과 내실을 갖추게 된 점은 WTO의 장점이 될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앨범업계 등 수많은 국내 업체들이 미국의 EU 등으로부터의 자의적인 반덤핑 공세로 억울하게 받은 무역 제재는 어렵게 될 것이므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일 것이다.

또한 관세가 낮아지고 무역장벽이 제거되고 회색조치의 철폐, 신규도입이 금지됨에 따라 우리의 수출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에 의하면 UR 타결로 인해 오는 2005년까지 세계 교역량이 7,450억 달러만큼 증가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바 우리의 점유율은 2.2%로 단순 계산해도 164억 달러의 교역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지적재산권의 보호, 해외투자제도 개선 등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가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정적인 면으로는 이상과 같은 긍정적인 면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정도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또한 WTO

우선 WTO 출범으로 영세농민과 중소기업체들이 적지 않은 개방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GR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환경보호 기준이 낮은 우리의 경우, 생산비의 추가 부담이 당연하다. 최악의 경우, 공정 개선이나 대체물질 개발 기술이 없어 선진국에 예속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중소기업 지원이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활용되어 온 금융·세제상의 지원 등 각종 산업정책과 정부보조금 정책에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게 됨으로써 국내산업 보호가 그만큼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농산물과 서비스산업 외에도 섬유·신발 등 후발개도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경공업 분야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한 항공기, 컴퓨터, 통신 등 아직 기술자립도가 낮은 첨단산업도 적지않은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 기기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관세를 완전히 없애야 하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전자, 종이, 완구, 비철금속 등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WTO 시대의 국제 규범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구체적으

<표 1> Post-UR 국제규범이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

규제 근거 산업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지적 재산권	무역 관련투자	MFA	수입선 다변화	정부 조달	국제 환경규범
식료품·담배		-			+				
섬유·가죽	+	-	+		+	+ -			
제재 및 목제품		-			+				
종이·펄프·인쇄	+	-		+	+				-
화학·석유·고무	+	-		+ -	+				-
비금속광물		-			+			+ -	
금속제품	+	-	+		+			+	-
기계	+	-		+ -	+		-	-	-
운수장비		-			+		-		
기타제조업	+	-		+ -	+				

자료: 산업연구원 1994. 4.

로 다루어야 하겠으나 이 글에서는 규제별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개략적으로 요약하는 것으로 그친다(<표 1> 참조).

### WTO 시대, 뉴라운드의 이슈와 영향

WTO 시대에는 GATT체제와는 달리 상품에 대한 관세율과 같은 전통적인 주제는 의미가 상실되고, 교역상품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각종 경제정책에 관한 규제로 4 개의 신라운드가 활발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첫째, 그린라운드(GR)는 각종 국제환경협약 체결과 함께 환경보호 문제를 공식적인 무역 규범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WTO가 출범한 이후 첫 일반이사회에서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개

도국과 후진국들에게 지구환경 보호라는 거스를 수 없는 명분을 제시하고 선진국과는 쌍무 차원에서 일방적인 규제를 당하지 말고 다자간 협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실현성이 높기 때문에 개도국들에게는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확실하다.

둘째, 블루라운드(BR)는 국제노동기구(ILO) 등을 통해 권고되고 있는 근로 규정을 국제 규범으로 하자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이 "노동력을 착취하여"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인식에서 세계 각국의 근로 조건을 평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BR은 아직 기본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국제 사회가 인정하는 근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국제 교역을 제재하려는 것이다. 지난 마라케시회의에서는

WTO 준비위 설립에 관한 각료 결정문 조항에 'WTO가 노동문제 등 추가적인 항목을 포함하는 제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켰다.

특히 미국, 프랑스 등은 WTO 발효와 동시에 BR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선진국들의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싼 인건비로 비교우위를 갖는 개도국들의 근로 조건을 높임으로써 반사적으로 선진국의 노동집약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확대해 보자는 속셈이다. 미국의 산별노조(AFL-CLO)나 EU의 유럽노조연맹(ETOC) 등이 이같은 맥락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셋째, 기술라운드(TR)는 기술개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UR 협상에서는 기술개발 지원에 대해 관대했으나 결국 향후 NICs의 상품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기술개발에 대해 원천적으로 막아 보자는 의도가 강한 것이다. 즉 TR의 핵심 의도는 선진국이 애써 개발한 기술에 무임승차함으로써 개도국들이 빠른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판단하여 앞으로는 선진국의 지속적인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개도국의 기술정책에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TR은 개별 국가의 기술개발 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쳐 국가 간의 마찰 요

인이 되고 있다는 OECD의 국제기술 규범 제정 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TR은 여기에 UR에서 제기된 국제기술 규범과 환경기술 관련 규범 등 기술과 관련된 포괄적 국제규범 개념이다. OECD 기술규범은 산업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소위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 공정 경쟁을 해치고 국제 무역에서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넷째, 경쟁라운드(CR)는 무역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경제제도도 국제무역 규범의 대상으로 하자하는 것이다. 이는 OECD가 오래 전부터 심도있게 논의해 온 것으로 무역 상품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경제정책이 무역 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R은 1992년 다보스 회의에서 다보스 EC 집행위 부위원장, 1994년 초에는 클린턴 美대통령이 UR 이후 통상문제의 하나로 지적하게 되었다. 이들은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세계화 시대가 됐음에도 국가마다 각각의 시장 구조와 기업 조직의 관행이 상존하여 통상 마찰을 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시장 개방 차원이 아닌 시장 구조와 기업 관행상의 차이까지 없앴으로 해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경쟁 조건의 평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쟁정책의 논의 대상이 된 배경이라고 한다.



<표 2> 뉴라운드 내용 및 영향

라운드	주요 내용	영향
G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 제한 또는 금지</li> <li>· 제품규격, 공정 및 생산방식 규제</li> <li>· 포장재 규제 및 환경 라벨링제도 도입</li> <li>· 환경상계관세 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품 생산비 증가</li> <li>· 재활용 원자재 수급 차질</li> <li>· 철강, 금속, 석유화학 업종 타격</li> </ul>
B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속한 경제개발을 이루었으나 초보적인 사회보장제도만 유지하는 국가에 대한 대책</li> <li>· 아동노동과 강제노동 금지 등 ILO규범 적용</li> <li>· 노동관련법을 제정하고도 적용치 않는 국가에 대한 대책</li> <li>· 저임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 후발개도국과 중남미 현지투자 업체에 악영향</li> </ul>
T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간 과학기술정책 조화를 위한 규범 제정</li> <li>· 과학기술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및 거주를 제한하는 국내규제 정비 위한 규범 제정</li> <li>· 산업기술 및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규범 제정</li> <li>· 국제기술 표준화 등 국제협력 관련 7개 규범 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CD 가입시 신국제 기술 규범 제정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li> </ul>
C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평협정(카르텔)</li> <li>· 수직협정</li> <li>· 유통체제에 영향 미치는 정부규제</li> <li>· 독점지배력 남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 상품 및 기업의 국내시장 접근 용이</li> </ul>

자료: 상공자원부 1994. 4.

현재까지 CR 협상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야는 ① 담합에 따른 가격·물량 조절과 입찰 조작, ② 모기업과 타점기업 간의 연계에 의한 시장 진입 장애, ③ 독점적인 공기업의 지위 남용, ④ 반덤핑 조치 남발에 따른 경쟁 제한 등이다.

이상의 뉴라운드의 기본 원칙은 생산비에 영향을 주는 환경·노동 등 각종 요소를 최대한 평준화하여 선·후진국간 구분 없이 동일선상에서 국제경쟁을 하자는 취

지다. 따라서 후진국에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뉴라운드의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 주요국의 대응 전략

#### 정부측

UR 타결로 타격이 큰 농산물에 대한 긴급대책을 제외하고는 아직 주요 선진국이

별다른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EU 등은 WTO체제의 이익을 최대로 향유하고자 자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술력 향상 정책, 자국기업의 국제화 지원 정책, 규제 완화 및 경쟁 정책의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미국은 클린턴정부의 '93년 신기술개발 전략', 경쟁력위원회의 1993년 시책보고서인 'Roadmap for Result', 국가정책평가단의 1993년 백서인 'Reinventing Government',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국가경쟁력강화시책' 등의 4대 정책을 축으로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정부규제 완화, 수입 및 외국인 투자 촉진, 정부조달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 요강(1994. 3. 29)을 발표하였고 '연구교류 촉진법'에 의한 국제 기술협력, '산업과학기술 연구개발 제도'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통산성의 기술개발 체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일련의 시책을 마련한 바 있다.

유럽의 경우는 EC 회원국 간의 상호기술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한 공동 투자를 통해 '유럽기술공동체'(ETC)의 협성을 추진하

고, 전통적으로 자유방임적 정책을 실시해 온 영국도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독일은 21세기형 전략기술인 정보공학, 신소재, 생명공학 등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기업측

WTO 출범으로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면서 다국적 기업을 비롯한 세계 우수기업들은 세계화, 경영혁신, 전략적 제휴 등 3대 전략을 통해 경쟁력 강화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이들 다국적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의 최우선 과제를 기업의 세계화에 두고 단순한 현지 생산뿐 아니라 R&D 투자 등에서도 현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은 현지투자를 ① 노동력이 가장 싼 나라에서 생산, ② 금융비가 가장 싼 곳에서 자본 조달, ③ 투자환경이 좋은 곳에서 기술개발, ④ 가장 유리한 시장에 집중 판매라는 4대 원칙 하에 국제화체제를 구축하고 있다(<표 3> 참조).

세계적 기업들은 또 공동 기술 개발, 공동 생산, 특허의 상호 공유, 상호 시장 침투, 부품 상호 구매 등에서 활발한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를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볼 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유기적인

<표 3> 세계 주요 기업 리엔지니어링 사례

기업	내 용
닛산자동차	자마공장 1995년 봄 폐쇄, 1995년까지 5,000명 감원.
히노자동차	課수를 305개에서 193개로 축소, 정보시스템부, 동아시아부課 폐지
신일본제철	히로다제철 高爐 가동 중단, 퍼스컴 등 채산성 악화 사업 철수, 철강 부문 15% 삭감, 4,000명 감원
NKK	회사 전체 15% 삭감, 3,200명 감원 철강부문 18%삭감, 2,600명 감원
듀퐁	6개 사업본부를 5 개로 축소, 원료 조달부터 제품 판매까지 일관 체 제 확립
AT & T	정보화시대 대비 컴퓨터부문과 전화부문 연계, 채산성이 좋은 오락과 출판부문 확대, 이동통신부문 강화 위해 텍코사 인수
G M	채산성이 악화된 항공우주 부문 매각
I B M	13개 사업본부 개편
도시바	100개 상품 중 3분의 1정리

협조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국제화·세계화를 보다 철저하고 강도있게 추진하여야 목전에 다가선 WTO 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UR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과 활용대책 강구**

WTO 협정 발효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국내 제도를 개편·보완하는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산업·무역정책의 방향**

정부는 첫째, UR 협상 결과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이를 계기로 경제운용 방식을 선진화하고 둘째, WTO 협정에 대한 우리 기업의 능동적인 대응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셋째, UR 이후 전개될 통상 이슈에 대한 쌍무적 통상 문제와 지역주의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넷째, 농업정책을 일반 경제정책과 조화있게 수행하는 것 등을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구체적 방안을 모색·

예를 들면,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UR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통일된 원산지 규정을 제정하고, 수출 자율 규제 등 모든 회색조치를 협정 발효후 4년 내에 철폐하여야 하며, 보조금 중 금리보조금은 협정 발효후 3년(개도국은 5~8년)내에 폐지하거나 허용보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감하게 국내 제도를 개편하고 있으며, 약 20 개의 법령을 개정

<표 4> 뉴라운드별 대기업 세계화 지원 방안

라운 드	대 응 방 안
U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세계화 추진</li> <li>· 국내 법령 및 제도 정비</li> <li>· 공산품·농산물·서비스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li> <li>· 수출 및 산업 지원제도 개편방안 마련</li> </ul>
G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적 접근방식 지지 및 적극 참여</li> <li>· 환경기술개발 지원 및 환경산업 육성</li> <li>· 에너지 절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조개편 촉진</li> <li>· 자원 재활용 촉진</li> <li>· 기업의 환경경영 추진노력 확충</li> </ul>
B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부처간 실무협의체 운영</li> <li>· 국내 근로수준 및 勞·使·政 협조모델 홍보</li> <li>· 지적 가능한 부분의 보완 추진</li> </ul>
T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중심 기술혁신체제 구축</li> <li>· 각종 기술관련 정책 체계적 추진</li> <li>· 다자간 국제기술규범 제정시 우리나라 입장 최대한 반영</li> <li>· 기술개발 국제화 추진</li> </ul>
C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직협정 규제강화 및 유통경로 다양화 추진</li> <li>· 반독점정책 강화</li> <li>· 주종 수출상품에 대한 국내시장 보호제도 철폐</li> <li>· 대응 논리 개발</li> </ul>

자료: 상공자원부 1994. 4.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같은 후속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종전과 같은 특정 산업에 대한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시행이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적극적인 의미의 산업 및 무역 정책 수행은 크게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경제 운용시 국제규범과의 일치 여부를 사전 검토함으로써 무역분쟁을 사전적으로 방지해야 할 것이다.

아직 UR 협상에서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시한이 정해진 금융·통신·해운 등 서비

스 분야의 후속 협상에도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 총력적 국제경쟁력 강화

정부는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속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산요소의 원활한 공급과 질의 개선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고금리·고임금·고地價·高 物流비용 등 소위 '4高' 문제가 행정규제의 영향

이 큰 것으로 판단하여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인 기술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입법 추진중인 「산업기술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산업기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술인력 및 기술정보망 등 하부 구조를 확충해 갈 계획이다.

끝으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추세인 세계화(globalisation)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세계화를 위해 제도(<표 4> 참조)를 개선하고 「국제화 지원센터」를 상공자원부와 KOTRA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 UR 이후의 통상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WTO체제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다자간 통상 이슈에 대해 초기 논의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면서 쌍무적 통상 문제나 지역주의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APEC, AFTA, EAEC, NAFTA, 동북아 경제협력구상 등 지역주의의 움직임에 대한 장단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WTO에서 지역주의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추가적 시장 개방에 대한 선진국의 쌍무적 통상 압력에도 WTO를 활용하여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종래와 같은 억울한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 총체적 농업정책 추진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쌀시장 개방을 막으려 했으나 개방의 거센 파고를 끝내 막지 못함으로써, 하루 속히 국내 농업구조를 고도화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업정책을 일반 경제정책과 분리시켜 추진하던 전철을 과감히 개선하여 총체적인 경제정책 테두리 속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도 WTO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마련된 대책을 요약하여 소개하면 <표 5>와 같다.

또한 WTO 출범과 1996년 OECD 가입에 대비하면서 오는 21세기의 세계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우리 경제의 국제화 추진계획 작성

<표 5> WTO체제하의 정부의 주요 대응방안

분 야	대 책 추 진 방 향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율 대폭 인하(무세화 또는 조화 방식) 품목에 대한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 및 수입 급증시에 대한 대비책 추진(산업피해 구제제도 활성화 등)</li> <li>· 외국의 관세 인하로 인한 진출 여건 호전을 활용하기 위한 품목별 지역별 수출 증대 대책 추진</li> </ul>
농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상 결과의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및 제도의 정비</li> <li>· 중장기 농어촌 종합발전 대책 수립 추진</li> </ul>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화 약속 관련 업종(78 개)에 대한 국내 법규 정비 및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li> <li>· UR에서 향후 양자협상에 위임한 분야에 대비한 준비</li> </ul>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쿼타제도의 개선, 쌍무협상을 통한 통상 활동 강화</li> <li>· 장기적인 구조개선 대책 추진(고부가가치화, 정보화)</li> </ul>
반덤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 관세의 적극 활용</li> <li>· 미·UR 등 선진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관세 발동에 철저한 대비</li> </ul>
수입허가절차 비관세장벽 (TB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허가 관련 절차의 명료화·간소화 등 개별법상의 수입추진 제도 개선</li> <li>· 국내제도의 보완과 GATT/TBT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대응체제 구축</li> </ul>
보조금·상계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수출 및 산업지원 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인 개편 방안 마련 (객관성·합리성 제고)</li> <li>· 상계관세 관련 국내제도의 보완 및 활성화</li> </ul>
긴급수입제한 (Safeguar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보완</li> <li>· 수출자율규제 등 수출제한제도(대상품목:180 개)의 개선</li> </ul>
원산지 선적전검사 (PS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법규 개정 및 보완, 통일원산지 규정 제정에 적극 참여</li> <li>· 선적전 검사 협정에 관한 운영 요령 제한</li> </ul>
무역관련투자 조치(TRI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지속과 외국 기업의 국내 영업 활동 여건 개선</li> <li>· 종합적인 해외투자 대책 수립·추진</li> </ul>
지적재산권 (TRI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제도를 보완하면서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 강화</li> </ul>
정부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제도의 정비(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li> <li>· 해외 조달시장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 추진</li> </ul>

자료: 상공자원부 1994. 4.

지침'(1994. 5. 27)을 확정하 바 있다. 동 계획의 구체적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추진 계획을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이같은 계획 수립은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WTO 출범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개방화, 국제화의 거센 파고 속에

대외 의존도가 크며, 개방폭이 좁고 국제화가 미흡한 우리 경제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때늦은 감도 적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같은 전략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계획들이

<표 6> 경제국제화 추진계획(요약)

12大 과제	세부 추진 계획	경제장관회의 상정시기
21세기 국제화의 기본 방향과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황해 경제권, 환동해 경제권 추진</li> <li>· 2020년까지의 GNP 성장 구조 조정, 국민 생활수준 등 좌표 제시</li> </ul>	94년 11월말 95년 4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및 OECD 가입과 관련한 경제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칩 배치 설계 등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WTO협정과 일치</li> <li>· 그린 GNP, R &amp; D, 보건의료 등 국민계정의 위성계정 작성</li> </ul>	94년 9월 94년 12월
금융 및 자본의 국제화와 외국인 투자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4단계 금리자유화 조기 추진 방안</li> <li>· 외국인투자 개방 예시 계획의 전면 재검토 및 조기 개방 추진</li> </ul>	94년 11월말 94년 6월말
WTO 출범에 따른 산업정책 방향 재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보험 연불수출 지원제도 보장 및 UR 협정에 따른 수출지원제도 개선</li> <li>· 금지보조금은 경과기간(5~8년)을 최대한 활용해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상계가능 보조금이나 허용보조금으로 대체</li> <li>· 외국인력 수입 등 중소기업의 인력대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력수급 대책 마련</li> </ul>	94년 11월 94년 10월말 94년 11월
개방하의 농어촌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제도 등 농정관련 각종 제도와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li> </ul>	94년 6월초
개방화 시대의 중소기업 경쟁 기반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7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및 496개 품목의 단체수의 계약제도에 경쟁요소 도입</li> <li>· 금융기관별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조기 축소 방안</li> <li>· 8 개 중소기업 관련 법률 통합</li> </ul>	94년 10월말 94년 9월말 94년 10월말
WTO체제하의 기술개발과 정보화사회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연구개발 지원 시스템 확립, 미래 첨단기술의 대기업간 공동개발 및 컨소시엄 확충</li> <li>· 산업 공공지역 등 각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 방안 수립</li> </ul>	94년 12월말 94년 12월말
국제 환경규범 강화에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 자원 재순환형으로 개편</li> <li>· 환경산업을 2000년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세제·금융 지원 확대</li> </ul>	94년 12월 94년 11월말
개방화 시대 해외진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투자에 각종 규제 완화 및 금융지원 확대</li> <li>· 해운업 면허제 폐지</li> </ul>	94년 12월 94년 11월말
지역주의에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 A F T A 지역 효율적 진출 전략</li> </ul>	94년 11월말
대의 경제정책 추진 체계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공관 주재관 제도의 효율적 운용 및 노동 등 新 국제경제 이슈에 적극 대응</li> </ul>	94년 12월말
국제화를 위한 인적 물적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수대학(원) 설치 검토</li> <li>· 지방 중소기업의 해외전용공단 조성 지원</li> </ul>	94년 12월 94년 11월

자료: 경제기획원 1994. 5. 27.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다하는 각고의 노력이 응집되지 않으면 안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 될 것이다.  
 라서 가계를 포함 각 경제 주체가 최선을

끝으로 목전에 다가선 WTO 시대에 우리 경제가 선진기업과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치밀한 정책도 매우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국민의 정신 내지 의식이 선진화되고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기능적 교육이 아닌 수인 교육이 정착되고 사회의 자정력을 소생시키는 도덕성과 윤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길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화의 요체요, 지름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참고 문헌

- 經濟企劃院. 1993. 「UR 협정과 대응과제」.  
 \_\_\_\_\_, 1994. 「경제국제화 추진계획 작성 지침」.  
 內外經濟新聞. 1994. 「WTO체제 출범(1~10)」.  
 大宇經濟研究所. 1994.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 경제」. 한국경제신문사.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3. 「UR 총점검 : 最終協定の 분야별 評價」.  
 每日經濟新聞. 1994. 「닷올린 WTO」.  
 本間忠良. 1994. 「ウルク”アイ・ラウンド”か”世界貿易を 變えた: 國際通商問題の 軌跡とWTOの創設」. 中央經濟社.  
 商工資源部. 1993. 「UR 타결에 따른 주요산업별 영향 분석 및 대책」.  
 \_\_\_\_\_, 1993. 「UR 協商 最終協定文」.  
 \_\_\_\_\_, 1994. 「최근 일본정부의 기업세계화 지원」.  
 \_\_\_\_\_, 1994. 「마라케쉬 UR 關係會議 關聯資料」.  
 \_\_\_\_\_, 1994. 「WTO 出帆과 産業政策方向」.  
 \_\_\_\_\_, 1994. 「WTO체제하에서 주요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강화 전략」.  
 \_\_\_\_\_, 1994. 「포스트 UR 시대 우리기업의 세계화 지원방안」.  
 孫祥皓. 1992. 「UR 補助金, 金融自律化와 産業金融・稅制의 改編方向」. 産業研究院.  
 \_\_\_\_\_, 1993. 「UR 協商 妥結과 産業競爭力 增大方案」. 産業研究院.  
 崔洛均. 1993. 「UR 妥結이 國內産業에 미칠 影響分析」. 産業研究院.  
 \_\_\_\_\_, 1994. 「UR 妥結에 부응한 産業支援制度」. 産業研究院.  
 \_\_\_\_\_, 1994. 「Post-UR 時代의 産業別 對應方案」. 産業研究院.  
 韓國經濟研究院. 1994. UR 협정과 분야별 대응과제. 「나라경제」 No. 39.  
 韓國經濟新聞, KIET. 1994. 「UR 이후, WTO 시대 國內産業 對應方案」.  
 韓國貿易協會. 1994. 「競爭政策의 國際規製화와 우리의 對應戰略」.  
 Bernard M. HOEKMAN, Petros C. MAVROIDIS. 1994. Competition, Competition Policy and the GATT. *The World Economy* Vol. 17. No 2.